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1999. 4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무국장 김인규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의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
-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고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임의규제로 폐지코자 함.
- 수입증지판매인승계신청기간 제한 → 10일 이내(폐지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29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국민의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
-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고취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임의규제로 폐지코자 함
- 수입증지판매인승계신청기간 제한 → 10일 이내(폐지)

부천시수입증지조례개정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

-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임의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정비대상 규제사무 중
-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판매인에게 승계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판매인의 승계시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삭제(안 제14조)

개정조례(안)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상황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수입증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항중 “제16조5항”을 “제16조1항”으로 한다.

-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. 다만, 판매인이 사망하여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판매인의 승계) 판매인의 사고,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	(삭제)

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5조(증지의 환매)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차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. 다만,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생략

③부천시 금고에서는 전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6조5항의 매수금액을 환매하여야 한다.

제25조(증지의 환매) ①.....
.....
....., 다만, 판매인이 사망하여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시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현행과 같음

③..... 제16조1항.....
.....